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4. 1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4.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 4. 4.
-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8. 4. 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의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존속기한 연장

| 개정전 존속기한 | 개정후 존속기한 | 연장기간 |
|----------------|----------------|------|
| 2018년 5월 30일까지 | 2023년 5월 30일까지 | 5년 |

3. 검토보고 (이주현 전문위원)

- 본 조례는 마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임.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5월30일까지로 만료되어 5년 연장한 2023년 5월30일까지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제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